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제2차 동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총 정원 1,305명을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1,312명으로  
7명 순증(안 제2조)

나. 각 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함(별표1)

- 1) 총 정원 1,305명 → 1,312명(7명 증원)
- 2) 구 본청 894명 → 916명(22명 증원)
- 3) 보건소 92명 → 92명(순증 없음)
- 4) 동 289명 → 274명(15명 감원)
- 5) 구의회사무국 30명 → 30명(순증 없음)

## 3. 개정근거

가. 지방자치법(2007.5.17 법률 제8435호)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 
(2007.12.13 대통령령 제20445호)

다. 2008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

【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-3659(2007.12.31)】

4. 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※ 순증 7명은 유보정원으로 관리 →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활용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8. 1. 3. ~ 1. 9.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1.10)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 제21조 및 제21조의4”를 “제22조 내지 제30조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1,305명”을 “1,31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275명”을 “1,282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관련 별표1 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 및 제3조 제1항 개정사항은 2008년1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제1항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312	916	30	92	274
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970	652	17	78	223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60	34	2 (행정또는별정)	8	16
6급	182	132	5	13	32
7급	278	174	6	27	71
8급	296	207	3	23	63
9급	146	99		6	41
별정직 계	13	7	5	1	0
5급 상당	0				
6급 상당	3	3			
7급 상당	7	3	3	1	
8급 상당	3	1	2		
9급 상당	0		0		
기능직 계	328	256	8	13	51
6급	6	6			
7급	15	15			
8급	45	40		1	4
9급	103	74	6	4	19
10급	159	121	2	8	28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<u>제21조 및 제21조의4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305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75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제22조 내지 제30조의</u> ----- -----</p> 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312명</u>----- 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82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#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규대조표

구 분	조정전					조정후					증감
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
총 계	<u>1,305</u>	<u>894</u>	30	92	<u>289</u>	<u>1,312</u> (+7)	<u>916</u> (+22)	30	92	<u>274</u> (-15)	+7
정무직	1	1	0	0	0	1	1	0	0	0	
일반직 계	<u>963</u>	<u>634</u>	17	78	<u>234</u>	<u>970</u> (+7)	<u>652</u> (+18)	17	78	<u>223</u> (-11)	+7
3급	1	1				1	1				
4급	7	5	1	1		7	5	1	1		
5급	60	<u>30</u>	2 (행정또는 별정)	8	<u>20</u>	60	<u>34</u> (+4)	2 (행정또는 별정)	8	<u>16</u> (-4)	
6급	182	<u>124</u>	5	13	<u>40</u>	182	<u>132</u> (+8)	5	13	<u>32</u> (-8)	
7급	278	174	6	27	71	278	174	6	27	71	
8급	296	207	3	23	63	296	207	3	23	63	
9급	<u>139</u>	<u>93</u>		6	<u>40</u>	<u>146</u> (+7)	<u>99</u> (+6)		6	<u>41</u> (+1)	+7
별정직 계	13	7	5	1	0	13	7	5	1	0	
5급 상당	0					0					
6급 상당	3	3				3	3				
7급 상당	7	3	3	1		7	3	3	1		
8급 상당	3	1	2			3	1	2			
9급 상당	0		0			0		0			
기능직 계	328	<u>252</u>	8	13	<u>55</u>	328	<u>256</u> (+4)	8	13	<u>51</u> (-4)	
6급	6	6				6	6				
7급	15	15				15	15				
8급	45	40		1	4	45	40		1	4	
9급	103	74	6	4	19	103	74	6	4	19	
10급	159	<u>117</u>	2	8	<u>32</u>	159	<u>121</u> (+4)	2	8	<u>28</u> (-4)	